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9. 1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3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 9.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화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청년인턴제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및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운영 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본 조례는 우리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청년”이란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고, 그 밖에 “인턴”, “청년인턴제”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미 취업자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세 살 범위에서 연령 상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연령 초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하여 구 예산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의 지원자격을 우리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제도로 중복지원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정 등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관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제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 조례 시행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와 중소기업체 선정에 있어서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자와 신청업체의 요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 짐.
 - 본 제도가 잘 운영되어 청년인턴제가 바람직하게 정착되면 관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발의연월일 : 2012년 8월 31일

발 의 자 : 김화영 의원 외 9명

1. 제안이유

- 영등포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청년인턴제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및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조 례 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턴”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라 한다)에 선발되어 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실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인턴제”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구 청년실업 해소 제도를 말한다.
4. “청년 미취업자”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

년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①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유사한 제도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청년 미취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6조(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업체) 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영등포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업체 중 국가나 서울특별시 등 타기관으로부터 이 조제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③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선정, 인건비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년인턴제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과 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1.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3. 서울상공회의소 영등포구상공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1명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추진단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

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